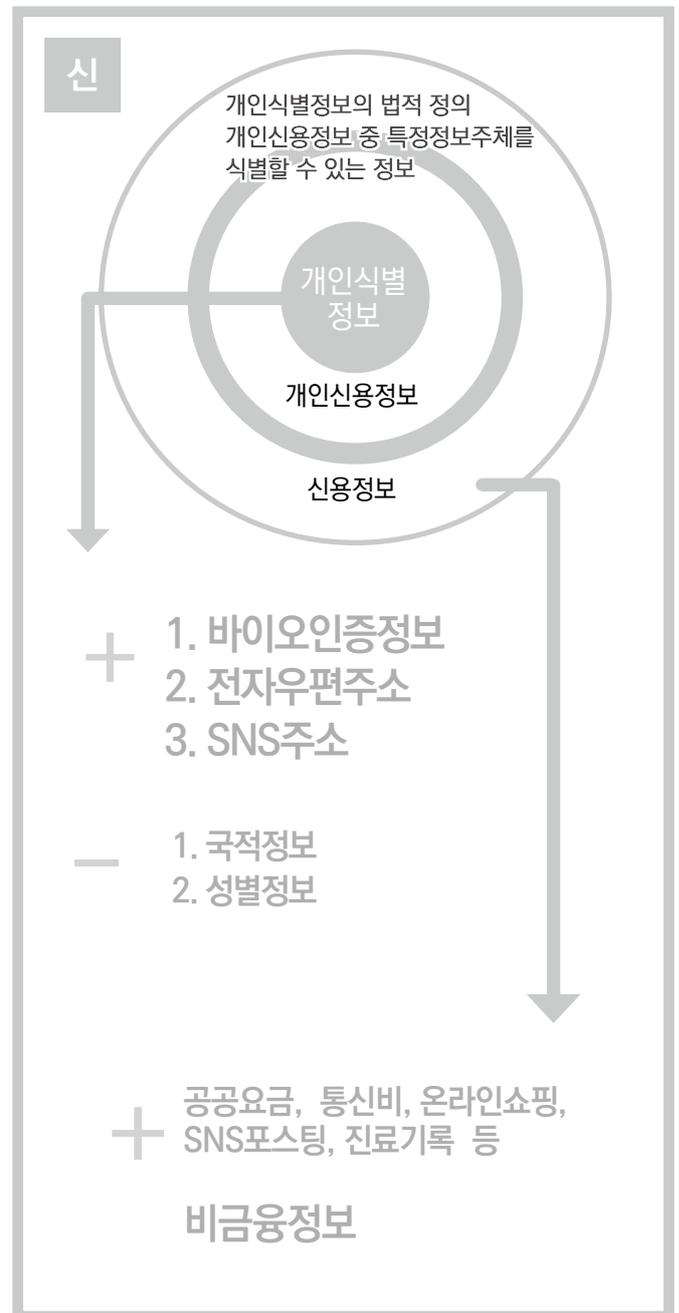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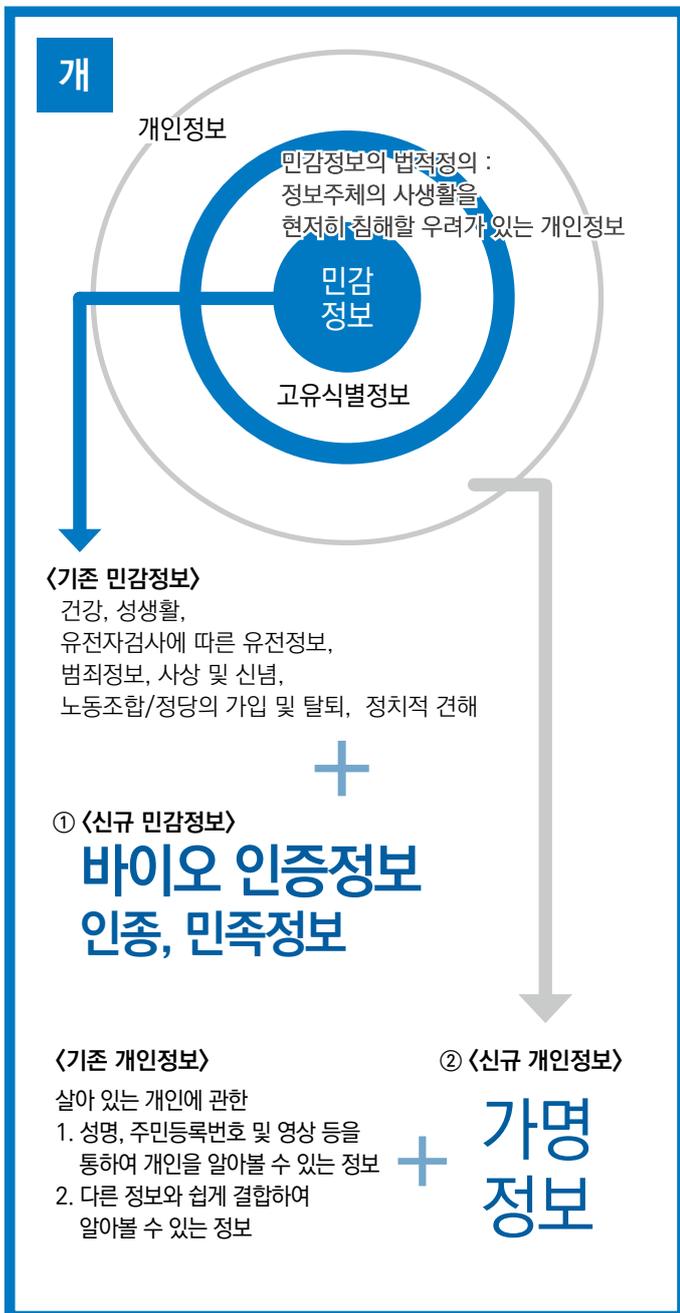


## 데이터3법. 핵심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



### 개 인정보 보호법 ② 개인정보에 가명정보 포함 추가

2020년 8월 20일 시행



# 개 개인식별성 기준으로 4단계 정보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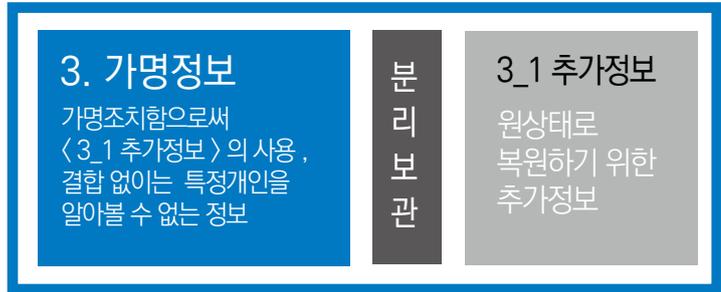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1. **단독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가명정보** 추가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 or 2를 <가명조치>하여 3과 3\_1로 분리

4. **익명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비(非) 적용

법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 개인정보처리 우선순위로 ①익명에 의한 처리 ②가명에 의한처리 원칙 제시

법 3 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의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 징벌적과징금 도입

## 개인식별목적으로 가명정보처리시 과징금. 최대 **전체매출의 3%**

법 제 28 조의 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령 29조의 6 "전체 매출액"이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참고\_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규정>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 최대5억,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동의없이 개인정보수집 등 중대위반시 위반행위 관련한 매출액의 3%.(매출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4억)

# 개 보호와 활용의 균형1. 가명정보 공통규정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

개인정보처리 우선순위로 ①익명에 의한 처리 ②가명에 의한 처리 원칙 제시

〈가명처리〉로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가이드라인 예정)

법2조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 유지 (고시예정)

조항	대상정보	내용	처벌
법 29조	가명정보 추가정보	1.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기술 4. 침해사고대응을 위한 접속기록보관&위변조방지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보관시설 or 잠금장치설치 등 물리적 조치	미조치시 과태료3천  미조치로 유출시 징역2년 벌금2천
법 29조의4 1항	추가정보 가명정보 추가정보	별도 분리 보관 및 접근 권한 분리 접근권한관리 및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내부 관리 계획 수립·시행	
령 29조의5 3항	가명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 경과시 지체없이 파기	
법 28조의4 2항	가명정보	처리시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추가정보의 이용 및 파기내역 작성보관	과태료1천

처리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생성시 처리중지, 정보회수 파기 (위반시 과태료 3천)

가명정보에는 정보주체대상 고지의무, 정보주체의 요구권 적용제외

법 28 조의 7	가명정보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0 조, 제 21 조, 제 27 조, 제 34 조제 1 항, 제 35 조부터 제 37 조까지, 제 39 조의 3, 제 39 조의 4, 제 39 조의 6 부터 제 39 조의 8 까지 )
-----------	--

대상	적용제외규정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	정보주체대상 고지의무 적용제외	정보주체이외로부터 개인정보수집시 수집출처 고지 영업양도시 개인정보이전내역 고지, 개인정보유출시 고지
	정보주체의 정보요구권 적용제외	개인정보열람권 정정삭제요청권, 처리정지요구권 활용측면의미 형사처벌부담의 감소 (위반시 2년징역 2천벌금의 형사처벌규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상 적용제외	유출시 감독기관에 신고, 휴면이용자 개인정보파기, 개인정보이용내역 주기적통지, 정보주체의 동의철회권	

개인식별목적으로 가명정보처리시 징벌적 과징금 전체매출의 3%  
+ 형사처벌(5년징역, 5천벌금) + 몰수추징+ 양벌규정 적용대상

개  
인  
정  
보  
의  
보  
호

개  
인  
정  
보  
의  
활  
용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

- ① 통계
  - ② 과학적 연구 (2조의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③ 공익적 기록보존
- 목적에 한해서

활용측면의 의미

출처: 데이터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 P13

법 제안이유, 과학적 연구에 민간투자 연구가 포함되는 점(법 제2조8호)을 고려하여 산업적 연구가 허용됨을 해설서를 통해 명확히 하겠음

출처: 데이터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 P17

개정 후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 내에서는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처리 후 결합하여 활용 가능

① ② ③ 목적에 한해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 허용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r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고시예정)



가명정보 결합신청 및 가명정보 결합물 반출프로세스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1. 결합신청서 제출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를 결합
	3. 결합신청자가 결합전문기관을 방문. 결합전문기관 내 분석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	
	3-1. 3 이 어려울 경우 결합정보반출신청	3-2 반출적정성심사위원회 구성, 결합정보를 익명정보 or 가명정보화하여 반출
		4. 비용 청구

출처: 데이터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 P17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 제공가능  
- 단, 제공받은 자가 자체 보유한 개인정보(가명정보 포함)와 결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야 함

·통계, 과학연구, 공익기록 목적이 아닌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처리시  
·가명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면서 개인을 알아볼 수있는 정보 포함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규정 위반시  
→ **형사처벌 (5년징역, 5천벌금) + 몰수추징+ 양벌규정**

# 법규정 1. 기본개념

신설규정 : 파란색텍스트

조항		내용
가명정보	법 2 조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 1 호의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가명처리		1 의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명처리 익명처리 의무	법 3 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익명정보 법적용 제외	법 58 조의 2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규정 2. 활용측면 규정

동의없이 처리가능	법 28 조의 2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 통계작성 > < 과학적 연구 > < 공익적 기록보존 >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 가명정보 > 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의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	---

기존규정 적용제외	법 28 조의 7	가명정보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0 조, 제 21 조, 제 27 조, 제 34 조제 1 항, 제 35 조부터 제 37 조까지, 제 39 조의 3, 제 39 조의 4, 제 39 조의 6 부터 제 39 조의 8 까지 )
		20 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21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 27 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제 34 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하생략)
		제 35 조 (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 36 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 35 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 37 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9 조의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15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제 39 조의 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제 34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 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 39 조의 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 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생략)	
	제 39 조의 7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 39 조의 8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 23 조, 제 39 조의 3 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제 17 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 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법규정 3. 보호측면규정 (개인정보보호법 3 절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		내용	처벌
처리시 금지 의무	법 28 조의 5	제 28 조의 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징역5년 벌금 5천 과징금 전체매출의3% 몰수추징 양벌규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여,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과태료 3 천

조항		내용	처벌
동의없이 처리가능	법 28 조의 2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 2 조의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징역5년 벌금 5천 몰수추징 양벌규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①에 따라 가명정보 3 자제공시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제한	법 28 조의 3	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	징역5년 벌금 5천 몰수추징 양벌규정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 58 조의 2 에 해당하는 정보 ( 영문 ) 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①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②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령으로 정한다.	
안전조치 의무	법 28 조의 4	① 가명정보 처리시, 원래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출시 징역 2 년 벌금 2 천 몰수추징 양벌규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 3 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과태료 1 천
	법 29 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출시 징역 2 년 벌금 2 천 몰수추징

이전 리포트보기 (2016.04 발송\_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